## 국민건강보험의 이해: 각 직역별

## 보건복지부

건강보험사업의 주관 (법 제2조) •주관 내용 -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-'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' 운영 -공단ㆍ 심평원 및 요양기관 관리 감독 -요양급여대상 및 그 인정기준 결정 -행위별 상대가치점수, 약제·치료재료별 상한금액 결정 -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업무정지(과징금) 처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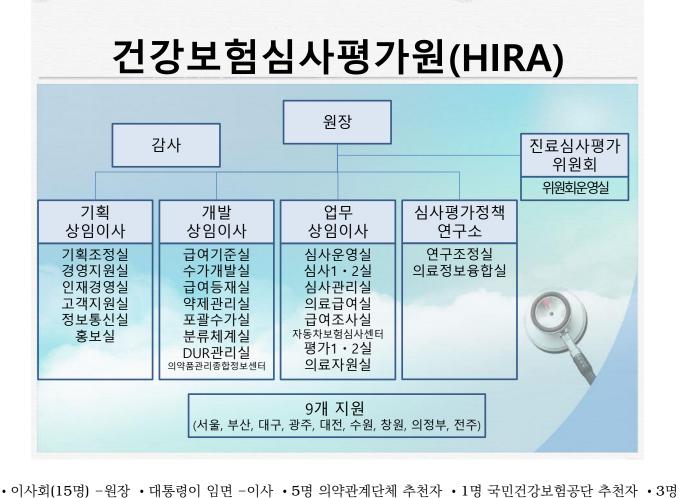
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(국민건강보험법 제 4조) -보건복지부장관 소속 -기능 •요양급여의 기준 •요양급여비 용에 관한 사항 •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 -구성: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의 위원 • 위원장 : 보건복지부차관 • 부위원장 : 공익위원 증에서 위원장이 지명 • 위원 8명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 각 2명,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,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8명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명 8명 공무원 2명, 공단의 이사장 및 심평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,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

# 국민건강보험공단(NHIS)

건강보험의 보험자 (법 제13조) • 업무 -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-보험료와 그 밖에 이법에 다른 징수금의 부과·징수 -보험급여의 관리 -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-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-자산의 관리·운영 및 증식사업 -의료시설의 운영 -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-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•이사회(15명) -이사장 •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-이사 •6명: 노동조합, 사용자단체,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, 농어업인단체, 노인단체에서 각 1명 •5명: 이사장 추천 •3명: 관계 공무원 •재정운영위원회(30명) -요양급여비용의 계약체계,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산정방법, 보험료 등의 결손처분 등을 심의 의결 -10명 : 직장가입자를 대표 -10명 : 지역가입자를 대표 -10명 : 공익을 대표

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

• 심사 및 평가기관 (법 제62조) • 업무 –요양급여비용의 심사 –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–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–관련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–다른 법률에 따른 급여비용 심사 및 적정성평가 위탁 업무



• 진료심사평가위원회 -1,090명 이내(상근 90명, 비상근 1000명) 요양기관

•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채택 (법 제42조) -관련 법률에 의거 개설  $\cdot$  등록된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은 별도의 신청 또는 지정 절차 없이 당연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가입자 등의 질병, 부상, 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함 -민간의료기관이

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천자 •4명 노동조합, 사용자단체, 소비자단체, 농어업인 단체 각 1명 •1명 관계 공무원

## 대부분 (90%이상) 인 우리나라 특수성 반영 • 종별 요양기관 현황(2016년 기준)

6월 기준)

가입자 •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 (법 제5조, 제6조) -의료급여 수급권자,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모두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됨 -직장가입자(피부양자)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• 가입자별 대상자 현황(2016년

### 건강보험 재원 • 보험료 (법 제69조) • 국고지원금 (법 제108조) •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의 지원금 (국민건강증진법 부칙) • 기타 수입금

구분

2011

건강보험 재정 및 보험료

건강보험 재정현황

2013

2014

2015

2016.8

2012

	수입	379,774	418,192	451,733	485,024	524,009	377,387
	. 보험료수입	323,995	358,535	386,117	412,404	440,476	317,718
	. 국고지원금	42,129	44,980	50,193	55,765	58,679	52,042
	(차상위지원)	(1,335)	(1,546)	(2,107)	(2,735)	(2,890)	
	. 담배부담금	9,567	10,073	9,986	10,191	15,185	
8	. 기타수입	4,293	4,605	5,444	6,664	9,669	7,627
	지출	373,766	388,035	415,287	439,155	482,281	345,421
	. 보험급여비	361,890	376,318	402,723	424,939	465,009	335,283
	. 관리운영비	11,040	11,387	12,179	13,753	16,773	10,138
ı	. 기타지출	836	330	385	463	499	
	당기수지	6,008	30,157	36,446	45,869	41,728	31,966
	누적수지	15,600	45,757	82,203	128,072	169,800	201,766
}보	험료 부과체계						
자	별 상이한 부과체계	(2016년)					

### 구분 직장가입자

부과기준		
	● 보수 * 사용자 : 사업소득	• 연소득 > 500만원 초과 세대: 소득, 재산, 자동차
	• 보수 外 소득	점수 합산
		<ul> <li>연소득 ≤ 500만원 이하 세대: 평가소득*, 재산,</li> </ul>
		자동차 점수 합산
		• * 성연령, 소득, 재산, 자동차로 산정
산정방식		
2001	● 보수월액 Œ 정률(6.12%,	● 보험료 부과점수 Œ 점수당 금액(179.6원, '17)
	'17)	
	• 보수 外 소득 연 7,200만원	
	초과 : 보수 外 소득의 3.06%	
	추가로 부과	
납부자	사용자 50%, 근로자 50%	지역가입자 세대 100%
최저최고	(본인부담) 8,560원 239만원	3,590원 228만원
보험료(월)	* 사용자부담 포함시	* 전액 본인부담
	17.120원 478만원	

지역가입자